



퇴직연금의 이해 (9):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유형

오병국 연구원

- 퇴직연금제도의 지배구조는 연기금 운용형태, 사용자와 운영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의 역할 관계 등 연기금 운용구조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계약형, 기금형, 회사형 등으로 분류됨.
- 계약형은 연금제도 관리 및 기금운용 등을 일괄적으로 연금사업자인 금융회사에 위탁하는 형태
 - 계약형의 경우 관리 및 운용주체가 금융회사가 되며, 경영자 주도에 따라 근로자와 금융회사 간 연금계약이 체결됨.
 - 금융회사가 연금제도에 관한 제도설계, 연금관리 및 기금운용 등을 일괄 수탁하는 형태이므로, 연금사업자인 금융회사와 가입자인 근로자 사이에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보험회사, 투신사 등 제2금융권 회사들의 상당수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할 경우 전염 효과(contagion effect)가 발생할 수 있음.
- 기금형¹⁾은 퇴직연금 제공 회사와 별도로 독립법인 형태의 연기금을 설치해 운영하는 구조임.
 - 기금형의 경우 주요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이루어짐.
 - 일반적으로 기금형은 노사 신뢰를 기반으로 기금에서 직접, 또는 펀드매니저를 고용하여 기금을 운용하는데,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도 있음.
- 회사형은 산업별로 별도의 연기금을 설립해 회사처럼 운영하는 것으로 주로 사회연대가 공고한 국가²⁾에서 운영되고 있음.
 - 회사형은 산업별로 공단을 설치·운영하는 형태로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의 역할을 대체함.

1) 주로 영국, 미국 등 앵글로색슨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음.

2) 네덜란드, 프랑스, 덴마크 등이 있음.

- 회사형은 산업별로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회사가 도산하더라도 퇴직연금 지급불능 사태가 쉽게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표 1〉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유형

구분	계약형	기금형(회사형 포함)
연금관리형태	금융회사에 일괄적 위탁	독립적인 퇴직연금 기금설치
관리 및 운용주체	금융회사 (운영기관, 관리기관)	기금에서 직접수행 혹은 기금운용의 외부위탁
연금운용의 주요결정	계약 (경영자 주도)	연기금위원회 (노사동수)
근로자참여	DC는 근로자 직접 투자	노조가 있는 경우 적극 참여
운용감독	금융기관이 대상	개별연금기금감독

자료: 류건식·김대환·이상우,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정책보고서 2013-2, 보험연구원.